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12
----------	-------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박성훈 · 박충권 · 고동진
김형동 · 김성원 · 한지아
이헌승 · 김기웅 · 이인선
김승수 · 박수영 · 신성범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서 개별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설계된 제도임. 현행법은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과태료의 체납액 및 체납률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어 현행법상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326억원에 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자료는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액은 약 2,000억원, 미납액은 그 25%에 해당하는 500억원을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액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130억원 수준에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4년에는 840억원에 달하였으나, 수납률은 21.6%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감치처분 등의 제재수단이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질서위반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위반 사실, 체납 내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1.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고액·상습과태료체납자명단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법무부장관은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4조의2(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위반 사실, 체납 내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u> <u>1.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u> <u>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u> <u>②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기</u>

위하여 법무부에 고액·상습과
태료채납자명단공개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법무부장관은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채납자 명
단공개 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채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채납
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
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에 게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
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
른 채납자 명단공개 및 심의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